

대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

[2016학년도 제2차 회의록]

정수	재적	출석
11	11	10

1. 일시 : 2017년 1월 25일(수) 11시 (회의소집통보일 : 2017년 1월 16일)

2. 장소 : 대신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

3. 출결사항

출석의원 : 10명(최부영, 조효제, 홍종수, 김도연, 서길수, 김성빈, 박재환, 백남승,
박민균, 윤필립)

결석의원 : 1명(김용준)

4. 안건

(1) 대신대학교 2016학년도 추가경정예산 자문의 건

(2) 대신대학교 2017학년도 학교비회계예산 자문의 건

(3) 대신대학교, 대학원, 신학대학원 학칙개정 심의의 건

(4) 기타의 건

5. 회의내용

(1) 의장이 조효제 의원 기도케 한 후 회원을 점명하니 10명이 출석하여 성수가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.

(2) 2016학년도 대신대학교 추가경정예산을 자문하니 총 세입금 5,720,000,000원(등록금회계 3,020,000,000원, 비등록금회계 2,790,000,000원)총 세출금 5,720,000,000원으로 확인한 후 홍종수 의원의 동의와 조효제 의원의 재청으로 가결하다.

(3) 2017학년도 대신대학교 학교비회계 자금예산서를 자문하니 총 세입금 5,440,000,000원(등록금회계 2,910,000,000원, 비등록금회계 2,530,000,000원) 총 세출금 5,440,000,000원으로 확인한 후 김도연 의원의 동의와 조효제 의원의 재청으로 가결하다.

(4) 대신대학교 학칙 제22조(휴학), 제36조의 2(학점인정), 제40조(시험), 제40조의 2(출결), 제41조(성적평가), 제54조(학생회 간부자격), 제81조(부속기관), 대신대학교 학칙시행내규 제3~5조, 대학원 학칙(통합)제16조(휴학 및 복학), 제38조(논문제출), 대학원학칙 시행내규 제12~13조, 제37~38조,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17조, 제19조, 제33조, 제37조, 제39조, 제8장, 제63조 내용을 심의한 후 붙임 자료와 같이 개정하기로 홍종수 의원의 동의와 조효제 의원의 재청으로 가결하다.

6. 폐회선언

위와 같이 논의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종수 의원의 동의와 박재환 의원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